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수입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 : _____ (인)

주소 :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수입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신청(이하 '개설 및 조건변경'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약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수입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신청 거래

제2조 신청내용 송신 및 책임

- 본인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개설 및 조건변경 신청을 한다.
- 본인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개설 및 조건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내용이 수출상과의 수입계약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약약하며 신청 내용이 계약사실과 상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신청내용의 접수확인과 거절

- 본인은 은행의 통상적인 영업시간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개설 및 조건변경신청서를 전송하며 영업시간 이후에 전송한 신청서는 익영업일에 전송된 것으로 본다.
- 은행은 본인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접수거절하는 경우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일로부터 익영업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며 통신환경의 장애 등으로 은행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하여 접수거절여부를 확인한다.
- 접수일 익영업일까지 은행의 FAX 또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접수거절 표시가 없는 경우 동 신청 및 부대서류는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개설 및 조건변경신청서의 효력 및 관련서류의 제출

- 은행은 상기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된 서류를 창구에서 접수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본인은 개설 및 조건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이 관련 근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납부

본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후취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계좌에서 은행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다만, 본인이 창구 납부를 원하는 경우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계좌번호			
통장(거래) 인 감			

제6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한다.

